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가. 제안이유

○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읍자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기금의 관련규정을 삭제(안 제3조 내지 제9조)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함.
-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속독사업지원금의 응자시 과다한 의무부담 및 조건을 삭제(안 제14조)
 - 응자시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제공 조문 삭제
 - 별도의 조건부여 조항의 삭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개정안이 현행안에 비해 더 포괄적인가요?	○ 하나는 농촌마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 있다. 그 중에서 농촌마을 소득 증대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 시관내에 농촌마을 성격을 띠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전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은 어느 지역에 지원한 것인가요?	○ 마을단위가 아니고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것 이 많지요?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지원시 무엇을 담보로 했나요?	○ 재산을 담보로 했습니다.
○ 지원금은 소득사업을 위한 응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 저소득층이며, 본 기금 자체가 당초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농촌마을과 소득지원사업 두 가지 중 농촌마을에 대한 규정은 현재 우리 시는 농촌마을을 지원할 사유가 없어 삭제하고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소득지원 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려 하는 것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34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주민의 소득증대와 마을의 자립기반을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읍자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 생활환경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촌마을과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기금의 관련규정을 삭제(안 제3조 내지 제9조)
 -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함.
- 규제완화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의 읍자시 과도한 의무부담 및 조건을 삭제(안 제14조)
 - 읍자시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제공 조문 삭제
 - 별도의 조건부여 조항의 삭제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용에”를 삭제한다.

제2조 및 제2장제3조 내지 제9조를 삭제한다.

제3장을 제2장으로 하고, 제2장의 제목을 “소득 사업”으로 한다.

제10조를 제2조로 하여 동조 제1항 중 “선정(기이 읍자반은 대상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 지회와 협의하여”를 “선정하되”로 하며 동항 제3호중 “특별지원”을 “새마을소득사업(이하 “소득사업”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로”를 “소속

공무원으로”로 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3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6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중 “제13조”를 “제5조”로 한다.

제16조를 제8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세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제9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2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 중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을 “소득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중 “특별지원”을 “소득사업”으로 동조 제2항 중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를 “융자금”은 “소득사업자금의”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11조로 하여 “세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와”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3장을 하고, 제2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2조 중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를 “소득사업의”로 한다.

제22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세마을소득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25조를 제16조로 하며 동조 중 “제7조 및 제14조”를 “제6조”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8조 제1호 중 “세마을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한다.

제28조를 제19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제2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세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세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u>세마을소득금고</u>(이하 “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세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세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세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세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세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제)</p>

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세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삭제)

제3조(읍자대상사업) 읍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삭제)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고등체소, 인삼, 약초, 유실수

나. 잡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다. 축산 : 한우위식, 육우, 양돈, 양, 양계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마. 양묘

바. 꿀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읍자대상) ① 읍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삭제)

1. 당해 주민이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금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②시장이 제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삭제)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제6조(대부기간)①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삭제)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연장할 수 있다.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 이내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 이내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거치 3년 이내 상환②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단기성 사업-사업수입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2. 중기성 사업-사업수입기간이 2년 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내의 사업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3인 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④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사업수입기간에 따라 수회 분단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이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금 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③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제9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제3장 특별지원사업제10조(융자대상 마을) ①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

(삭제)

(삭제)

(삭제)

제2장 소득지원사업제10조(융자대상 마을) ①.....

<p>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이 응자 반은 대상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부천 시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 선정 하되</p>
<p>1.~2. (생략)</p>	
<p>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p>	<p>1.~2. (현행과 같음) 3. 새마을소득사업(이하 "소득사업"이라 한다)으로</p>
<p>4. (생략)</p>	
<p>②시장은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 시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4.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사업대상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11조~제13조(생략)</u></p>	<p><u>제3조~제5조(현행 제11조 내지 제13조와 같음)</u></p>
<p>제14조(융자금 대부신청) ①~②(생략)</p>	<p><u>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②(현행과 같음)</u></p>
<p>③본 융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삭제)</p>
<p><u>제15조(융자금의 상환)</u>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u>제13조</u>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p>	<p><u>제7조(융자금의 상환)</u> <u>제5조</u></p>
<p><u>제1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u>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와 협의하여 부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u>제8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u>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부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③(생략)</p>	<p>②~③(현행과 같음)</p>
<p><u>제17조(가산금 및 독촉)</u> ①(생략)</p>	<p><u>제9조(가산금 및 독촉)</u>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시장은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전에 징수할 때에는</p>	<p>②..... <u>제18조</u></p>

예외로 한다

제18조(우수농고생 영농경작특별지원금 읍자특례) ①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의욕이 뚜렷한 모범 학생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거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읍자할 수 있다.

②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경작특별지원금과 산 환급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④(생략)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우수농고생영농점착특별지급운용규정(행정자치부장관 혼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19조(1동 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①농촌지역
의 임대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
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동 1특화사업자금을 융
자할 수 있다.

② 1동 특화사업지원금과 삼화금은 특별지위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
동당 4천오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퍼센트, 3년거치 5년 공동상환으로 한다.

⑤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
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부천시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
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소득사업…………)

...) ①.....

.....

.....

..... **소득사업**

.....

② 윤자금은 소득사업자금의 ..

.....

(상지)

(설제)

제11조(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p><u>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u></p> <p><u>제21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u>를 위하여 시에 세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p> <p><u>제22조(세입·세출) ①(생략)</u></p> <p>②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u>세마을소득사업</u>을 위한 응자금으로 한다.</p> <p><u>제23조~제24조(생략)</u></p> <p><u>제5장 보 측</u></p> <p><u>제25조(융자금의 대출)</u> 시장은 <u>제7조 및 제14조</u>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응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p> <p><u>제26조(중복응자의 금지) (생략)</u></p> <p><u>제27조(융자금의 반환) (생략)</u></p> <p>1. <u>세마을사업</u>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3. (생략)</p> <p><u>제28조(체납처분) (생략)</u></p> <p>1. (생략) 2. <u>제29조</u>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상환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p> <p><u>제29조~제30조(생략)</u></p>	<p><u>제3장</u></p> <p><u>제12조(설치) 소득사업의</u></p> <p>.....</p> <p>.....</p> <p><u>제13조(세입·세출) ①(현행과 같음)</u></p> <p>②.....<u>소득사업</u>.....</p> <p>.....</p> <p><u>제14조~제15조(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u></p> <p><u>제4장</u></p> <p><u>제16조(융자금의 대출)</u><u>제6조</u>.....</p> <p>.....</p> <p>.....</p> <p>.....</p> <p><u>제17조(중복응자의 금지) (현행 제26조와 같음)</u></p> <p><u>제18조(융자금의 반환) (현행 제27조와 같음)</u></p> <p>1. <u>소득사업</u>.....</p> <p>2.~3. (현행과 같음)</p> <p><u>제19조(체납처분) (현행 제28조와 같음)</u></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8조</u>.....</p> <p>.....</p> <p><u>제20조~제21조(현행 제29조 및 제30조와 같음)</u></p>
--	---